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17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박해철・박지원・김 윤

한준호 · 송옥주 · 임미애

강유정 • 박용갑 • 양부남

문금주 · 오세희 · 이병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목적하에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해 산업 육성, 정보화 촉진,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노력도의무화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등에 관한 문제가 덜 중요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높아지고 있음.

특히 농어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요통, 관절염 등) 유병률이 일반 근로자보다 약 1.5~2배 높고(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고혈압 유병률, 우울증 고위험군 비율도 일반 국민들에 비해 높은 상황(농촌진흥청 조

사, 2021~2022년)등을 고려할 때, 농어업인들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 강화는 매우 절실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업인들과 농어촌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과 노력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4조).

법률 제 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률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문화예술"을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문화를"을 "전통문화 및 생활체육을"로, "향토문화축제"를 "항토문화축제 및 생활체육축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예술 활동"을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동"으로, "문화 향수"를 "문화 향수 및 생활체육"으로, "전시"를 "전시 및 생활체육"으로 한다. 제34조 제목 중 "문화복지시설"을 "문화복지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농어촌의 <u>문화예술</u> 진흥)	제33조(문화예술 및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	생활체육) ①
어촌의 <u>전통문화를</u> 계승·발전	<u>전통문화</u>
시키기 위하여 <u>향토문화축제</u> 를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u>향도문화축제 및</u>
	<u>생활체육축제</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	②
어촌 주민의 <u>문화예술 활동</u> 을	문화예술 및 생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u>문화</u>	<u>활체육 활동</u> ,
<u>향수</u> 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	문화 향수 및 생활체
여 농어촌에서 문화예술 공연	<u>육</u>
· <u>전시</u>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	
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전시 및 생활체육
한다.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제34조(문화복지시설 및
설치 및 운영 지원) (생 략)	<u>생활체육 시설-</u>
) (현행과 같음)